

# 審 查 報 告 書

2001. 6. 2

의회운영위원회

## 1. 審 查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1. 5. 22.

나. 발 의 자 : 신준범 의원의 12인

다. 회부일자 : 2001. 5. 24

라. 상정일자 : 2001. 6. 2

## 2. 提 案 說 明 要 旨 ( 提 案 說 明 : 愼 俊 範 議 員 )

### 가. 改 正 理 由

- 현행 조례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의회의 감사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나. 主 要 骨 子

-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조정(안 제2조 제2항).

## 3. 專 門 委 員 檢 討 意 見 要 旨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 지방자치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사안이 삭제(2000. 7. 1자 개정)되어

- 본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8
----------	-----

발의년월일 : 2001. 5. 22.  
발 의 자 : 신준범의원외12인

## 1. 改正理由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市·郡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행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감사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정하여져 2000년도 기 실시한 결과 당해 회계연도 중반으로 적정한 예산집행 및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등의 감사가 어렵고 또한 연말에 비하여 같은 기간중에 상급기관의 계통 감사와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 방지의 기능이 있음에도 감사기간의 불합리로 의회의 감사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중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여 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의회 감사기능을 제고코자 함이며.

## 2. 主要骨子

-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조례안 제2조제2항 “별표”)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

하되”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로 개

### 3. 參考事項

-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차” 를 “제2차”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생략)</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⑤(생략)</p>	<p>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 ----- ----- ----- ----- -----</p> <p>③~⑤(현행과 같음)</p>